

라.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

- 1)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 · 조정을 거쳐야 함
(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8)
- 2) 설치: 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(고등학교 포함) 교사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교육장 소속 하에 설치함
- 3) 구성: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~7인, 위원장은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됨
- 4) 심의사항: 학교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분포 간 개인별 점수 차를 균등하게 조정함
- 5)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은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보관